

## 서 면 답 변 서

- 질의 위원 : 정종태 의원
- 답변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질의 요지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이구화 소장 해임사유

### □ 답변내용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이구화 소장 해임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타 소장 해임 결정건은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인사규정 제22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2007. 3. 12 선우복지마을 인사위원회에서 법인의 복종의무 위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결여, 직원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초래등 사유로 해임 결정후 2007. 3. 19 달성군에 협의요청, 2007. 3. 20일자로 위탁법인에 해임 승인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붙임 해임결정 관련 공문사본 1부.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8년 12월 12 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성명 김후진

##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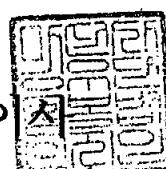
수신처 : 달성군수  
(경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목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소장 해임 결정에 따른 협의

1. 귀 청 군민의 복지향상과 자치단체 발전에 주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법인 공개채용, 귀 청에서 승인한 달성군자원봉사센터소장과 관련하여 본 법인 인사규정 제 22조에 의거, 소장 해임 결정에 따른 귀 청과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불 임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1부.  
관련규정일부문 1부. 끝.

선 결	군 수	2007-03-19	결 재	부군수	
접수일시		번호 103	(공	국 장	전 결
처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조운미	람)	과 장	103-03-19
				담당	조운미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대표○

담당 신은숙

대표이사 박경숙

협조자

시행일자 선우 2007-014호(2007. 3. 19)  
우 703-828 대구시 서구 비산5동 1041-3

전화 053)354-5119 전송 053)359-0108 / sunwoowf@hanmail.net / 공개  
358-9777, 358-9994

## 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소 속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직 위	소 장			
	직 급	소 장	성 명	이구화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06-13					
정계사유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결여로 직장 화합 저해 및 직원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초래 등						
정계요구권자 의견	<p>○ 상기인은 2006년 12월 30일자 본 법인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모에 응모 무보수 명예직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2007년 1월 16일 임명되어 근무하면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대표의 임용권에 대한 무시 행위</li> <li>2) 업무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지시 미이행 등 법인의 복종의무 위반</li> <li>3)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의 적기 미이행 등 저조한 실적으로 직무태만</li> <li>4) 법인의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 선동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li> <li>5) 법인의 자원봉사센터의 수탁을 방해하고 음해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수탁기관의 변경을 기도하는 등 법인에 해가 되는 언행을 일삼고 있음</li> <li>6) 각종문서를 독점 비공개 처리하여 직원들이 업무전반에 능동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직장 화합 및 직원 근무의욕의 저하 요인 제공 등 적시한 정계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법인의 운영규정 제22조에 의거 조치의결을 요구합니다.</li> </ol>						
<p>위와 같이 정계의결을 요구함</p> <p>2007년 3월 12일      정계의결 요구권자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사무총장 신은숙 (서명 보류 인)</p> <p>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 관련 규정 일부문

관련규정	내 용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800000;">(1)</span> <u>인사규정 제 5장 신분보장 내용 일 부</u>	<p>제 21조(직원의 직위 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계의결 요구증에 있는 자</li> <li>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li> <li>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li> </ul> <p>② 제 1항에 위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22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lt;별첨 제4호&gt;에 의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결의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규정을 위반한 때</li> <li>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li> <li>3. 법인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li> <li>4. 법인 지시의 불복종 및 법인 명예를훼손한 때</li> </ul> <p>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견책으로 구분한다</p> <p>③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p> <p>④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처분사유를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징계양정기준은 &lt;별첨 제5호&gt;에 의한다</p> <p>제23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li> <li>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법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li> <li>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파원 되었을 때</li> <li>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할 때</li> <li>5. 기타 법인의 목적과 이념에 위배되어 이사회에서 직권 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ul>

정 계 양 정 기준

(제21조 관계)

비위의 유형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견 책
나. 기타	파면-해임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견 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견 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견 책
6. 청렴의무 위반	파 면	견 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격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견 책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 면	견 책

## 보 고 서

2007. 3. 19

보고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제목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소장 해임요청에 따른 협의

요청일시 : 07. 3. 19

해임요청기관 :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해임사유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등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직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 법인의 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 선동하는등 성실의무 위반
-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결여로 직장화합 저해 및 직원 사기저하 와 근무의욕 상실초래등

향후 추진상황(소장 선임 절차)

- 주관 :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 방법 :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현황

명칭	소재지	소장	면적 (m <sup>2</sup> )	위탁기간	위탁단체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화원읍 천내리 105-15번지 (2층)	이구화	112	07.1.1 ~ 08.12.31 (2년)	(사)선우 복지마을 대표이사 박경숙

\* (사) 선우복지마을 :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06.12.29(금)

□ 주민생활지원과 검토사항

- (사)선우복지마을의 주장과 현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의 생각  
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지 출장하여 법인과  
소장 및 직원의 사실조사 검토 요망됨

## 달성군



수신자 사단법인 선우복지마을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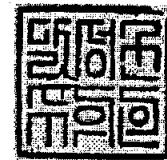
### 제목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소장 협의 선임 요청

1. 사단법인 선우 2007-14(07. 3. 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의 달성군자원봉사센터 소장 해임 결정 협의 요청건에 대해 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속히 자원봉사센터소장 선임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붙임 달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1부. 끝.

달 성 군



03/20  
지방행정주사보 조은미 서비스연계담당 권혁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윤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희

협조자

시행 주민생활지원과-1333 (2007.03.20.) 접수 ()  
우 705-709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9(금포리 1313) /  
전화 053-668-3052 전송 053-668-3070 / hkedhe@hanmail.net / 공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문개정 2006. 10. 4 조례 제 1956 호)

### 제1장 <sup>†</sup>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의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협의회) ①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4.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 협의·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단체 소속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20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 제2장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군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수탁자간 협의에 의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대외 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격려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범시민적 행사

제15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정 등) 군수는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에 대하여 학교·직장 등의 장에게 취업·임용 및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해·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센터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센터의 장에 임명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발전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회칙을 변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